

ETC 시스템 이용 규정

제 1 조 (목적)

본 이용 규정은 동일본 고속도로 주식회사, 수도 고속도로 주식회사, 중일본 고속도로 주식회사, 서일본 고속도로 주식회사, 한신 고속도로 주식회사, 혼슈시코쿠엔락 고속도로 주식회사 및 공사 등 (유료도로 자동요금수납 시스템을 사용하는 요금징수사무 취급 관련 법령(1999년 건설성령(建設省令) 제 38 호)(이하 ‘성령’) 제 2 조 제 1 항에 따라 공고 또는 공시한 지방도로공사 또는 도도부현(都道府県)이나 시정촌(市町村)인 도로 관리자를 뜻하며 이하 같음)이 성령 제 2 조 제 2 항 규정에 따라 알려야 할 사항을 정한 것입니다.

제 2 조 (준수사항)

무선 통신으로 통행 요금을 지불하는 데 필요한 수속을 자동으로 실시하는 시스템(이하 ‘ETC 시스템’)을 이용하려는 자는 본 이용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준수하지 않는 경우는 ETC 시스템을 사용하여 통행 요금을 청구하는 동일본 고속도로 주식회사, 수도 고속도로 주식회사, 중일본 고속도로 주식회사, 한신 고속도로 주식회사, 혼슈시코쿠엔락 고속도로 주식회사 및 공사 등(이하 ‘ETC 시스템 취급 도로 관리자’)은 ETC 시스템 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제 3 조 (이용에 필요한 절차)

ETC 시스템을 이용하려는 자는 제 (1) 호에 언급된 절차를 완료한 후 제 (2) 호부터 제 (4) 호의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1) ETC 시스템 취급 도로 관리자 또는 ETC 시스템 취급 도로 관리자와의 계약에 따라 ETC 카드(차량 장착 무선 장치(자동차(도로 운송 차량법(1951년 법령 제 185 호) 제 2 조 제 2 항에서 규정한 자동차를 뜻하며 이하 같음)에 설치하여 도로측 안테나와 통행 요금 지불에 필요한 정보를 교신하는 무전기를 뜻하며 이하 같음)에 삽입하여 무선 장치를 작동하고 통행 요금 지불에 필요한 정보를 기록하는 카드를 뜻하며 이하 같음)를 발행하는 자가 정한 절차에 따라 ETC 카드를 대여받을 것.

(2) ETC 시스템을 이용하는 자동차에 무선 장치 제조업체에서 적합하다고 규정한 무선 장치를 구입하거나 그 외 방법으로 취득할 것.

(3) 전 호에서 취득한 무선 장치를 무선 장치 제조업체가 규정한 방법으로 자동차에 설치할 것.

(4) 성령 제 4 조 제 1 항 제 (3) 호에 규정된 일반 재단법인이 정한 방법으로 제 (2) 호에서 취득한 무선 장치를 통행 요금 지불에 필요한 정보를 기록하여 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 것(이하 ‘설정’).

제 4 조 (무선 장치 취급)

무선 장치의 분해, 개조 등 기능을 손상시킬 수 있는 행위는 하지 마십시오.

2. 무선 장치 안테나 주변에 물건을 두는 등 전파를 차단하지 마십시오.

3. 무선 장치를 취득한 자는 무선 장치가 장착된 자동차의 번호판 (자동차 등록 번호표 및 차량 번호표) 이 변경된 경우, 무선 장치가 장착된 자동차를 견인할 수 있는 구조로 개조한 경우, 또는 무선 장치를 다른 자동차에 설치한 경우 등 설정된 정보가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다시 설정해야 합니다 .

제 5 조 (ETC 카드 취급)

ETC 카드의 분해, 개조 등 기능을 손상시킬 수 있는 행위는 하지 마십시오 .

2. ETC 카드를 대여받은 자는 ETC 카드를 분실이나 도난 등으로 잃어버린 경우, 또는 대여한 ETC 카드가 파손 또는 변형된 경우 즉시 이를 ETC 카드 발급자에게 통보해 주십시오 .
3. 유효 기간이 경과된 ETC 카드 및 ETC 시스템 취급 도로 관리자 또는 ETC 시스템 취급 도로 관리자와의 계약에 따라 ETC 카드 발급자가 무효화시킨 ETC 카드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

제 6 조 (이용 방법)

ETC 시스템을 이용하는 자는 ETC 카드를 무선 장치에 정확히 끼워, ETC 시스템 이용이 가능한 것을 확인한 후, 차선 표지판 (톨게이트 차선상에 설치된 ETC 시스템의 이용 가능 여부를 나타내는 안내판을 뜻하며 이하 같음) 에 ‘ETC’, ‘ETC 전용’, ‘ETC/ 일반’ 또는 ‘ETC/ 지원’ 의 표시가 있는 차선 (이하 ‘ETC 차선’), 스마트 IC (지방 공공 단체가 고속 자동차 국도법 (1957 년 법률 제 79 호) 제 11 조의 2 제 1 항의 규정에 따라 연결 허가를 받은 동법 제 11 조 제 (1) 호의 시설 또는 도로법 (1952 년 법령 제 180 호) 제 48 조의 5 제 1 항의 규정에 따라 연결 허가를 받은 같은 법 제 48 조의 4 제 1 호의 시설에서, 도로정비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1956 년 건설성령 제 18 호) 제 13 조 제 2 항 제 (3) 호 본문에 규정된 ETC 전용 시설만 설치되며, 동항 (가) 항목에 규정된 ETC 통행 차량만 통행 가능한 인터체인지를 뜻하며 이하 같음) 의 차선 (톨게이트 이외의 장소에서 ‘ETC’ 의 표시가 있는 ETC 통신시설이 설치된 차선을 제외하며 이하 같음) 또는 일단 정지를 요하는 ETC 차선 (ETC 시스템 이용규정 실시세칙 제 6 조 기타 사항에 정하는 톨게이트 뜻하며 이하 같음) 을 통행하십시오 .

제 7 조 (ETC 시스템 이용 제한 등)

ETC 시스템 취급 도로관리자는 도로 관리상 필요한 경우 예고 없이 ETC 시스템 이용을 제한하거나 중지할 수 있습니다 .

제 8 조 (통행상 주의 사항)

ETC 시스템을 이용하는 자는 ETC 차선을 통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

- (1) ETC 차선 이용이 가능한지 확인한 후 시속 20 킬로미터 이하로 진입할 것 .
- (2) ETC 차선 내에서는 서행할 것 .

(3) 앞차가 정지할 경우가 있으니 충분한 차간 거리를 유지할 것. 특히 차선 표시판에 'ETC/ 일반' 또는 'ETC/ 지원' 표시의 차선에서는 앞차가 ETC 시스템을 이용하지 않을 경우 정지하니 주의할 것.

(4) 전광 표시판 (차선 옆에 설치된 장치이며 통행 여부 외에 차종 구분, 통행 요금 금액 등을 표시하며, 이하 같음)에 통행할 수 있는 경우는 '↑', 통행할 수 없는 경우는 'STOP 정차'가 표시되니 이 표시를 확인할 것.

(5) 전광 표시판에 'STOP 정차'가 표시된 경우 ETC 차선상에 있는 개폐식 크로스 바('개폐봉' 이하 같음)가 열리지 않거나 닫히므로 개폐봉 바로 앞에서 정지하여 직원의 지시에 따를 것. 이 경우 함부로 차 밖으로 나가거나 전진 또는 후퇴하지 말 것.

(6) 전광 표시판에 '↑'가 표시된 경우 ETC 차선의 개폐봉이 열려 있는 것을 확인하고 개폐봉과 기타 설비에 충돌하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서행할 것.

(7) 다른 차량과 나란히 주행하거나 추월하지 말 것.

2. ETC 시스템을 이용하는 자는 스마트 IC 차선 및 일단 정지해야 하는 ETC 차선을 통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1) 해당 차선 주변에 설치된 안내판 등에 따라 천천히 진입하여 지정된 정지 위치 (이하 '정지 위치')에 반드시 일단 정지할 것. 아울러 정지 위치에서 통신 개시 버튼을 눌러야 하는 경우에는 안내판 등의 지시에 따를 것.

(2) 다른 자동차와 나란히 주행하거나 추월하지 말 것.

(3) 개폐봉이 열려 있는 것을 확인하고 개폐봉과 기타 설비에 충돌하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서행할 것.

(4) 개폐봉이 열리지 않을 경우 개폐봉 바로 앞에서 정지하여 직원에게 도움을 구할 것.

3. 이륜차로 (도로운송차량법 제 3 조의 소형 자동차 또는 경차인 이륜자동차 (사이드 카가 달린 이륜 자동차 (걸터앉는 좌석, 핸들바 방식의 조향 장치, 바퀴 3 개에 운전자석 옆이 개방된 자동차이며 삼륜 캐노피형 자동차로 등록된 자동차를 포함하며 이하 같음)를 포함)를 뜻하며 이하 같음) ETC 시스템을 이용하는 자는 ETC 차선, 스마트 IC 차선 및 일단 정지를 해야 할 ETC 차선을 통행하는 경우 전 2 항 각 호의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1) 안내판이나 도로 표시 등에 따라 이륜차 통행이 가능한 차선인지 확인하고 진입할 것.

(2) 안내판이나 전광 표시판 등에 통행 방법이 표시된 경우 그 표시에 따라 통행할 것.

(3) 너무 느리게 주행하지 말고, 또 구불구불 주행하지 말고 앞차와 충분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1 대씩 똑바로 진입할 것.

4. 이륜차 (이 항에서만 사이드 카가 달린 이륜 자동차 제외)로 ETC 시스템을 이용하는 자는 ETC 차선을 통행하는 경우 개폐봉이 열리지 않거나 닫혀 있을 시 제 1 항 제 (5) 호 규정에 관계없이 후퇴하지 말고 개폐봉과 뒤 차량 등을 살펴 안전한지 확인한 후 개폐봉을 피해 ETC 차선에서 벗어나십시오. 이 경우, 주정차가 가능한 곳에서 안전한지 확인한 후 바로 해당 ETC 차선을 관리하는

ETC 시스템 취급 도로 관리자에게 연락하여 지시에 따라주십시오 .

5. 직원이 차선을 횡단하는 경우가 있으니 주의하여 통행하십시오 .

6. ETC 시스템을 이용하는 사람은 톨게이트 외 장소에서 ‘ETC’ 표시가 있는 ETC 통신 설비가 설치된 곳 주변을 통행하는 경우 표지판 및 기타 표시에 따라 주십시오 . 이 경우 동일 차선 내에서 나란히 주행하거나 추월하거나 갓길로 주행하지 마십시오 .

제 9 조 (ETC 시스템을 이용하지 않을 경우의 통행 방법)

ETC 시스템을 이용하지 않는 자는 차선 표지판에 ‘ETC’ 또는 ‘ETC 전용’ 표시가 있는 차선, 스마트 IC 차선, 일단 정지해야 하는 ETC 차선에 진입하지 마십시오 . 실수로 이 차선에 진입한 경우 개폐봉 바로 앞에서 정지하여 직원의 지시에 따라 주십시오 . 이 경우 함부로 차 밖으로 나가거나 전진 또는 후퇴하지 마십시오 .

제 10 조 (통행 요금 계산)

ETC 시스템을 이용한 경우 ETC 시스템 취급 도로 관리자의 기록 장치에 기록된 통행 거리에 따라 통행 요금이 계산됩니다 .

제 11 조 (면책)

ETC 시스템 취급 도로 관리자는 ETC 시스템을 이용하려는 자 또는 ETC 시스템을 이용한 자가 본 이용 규정을 따르지 않아 발생한 손해에 대해 일절 책임지지 않습니다 .

제 12 조 (별도 규정)

이용 증명서가 필요한 경우, 장애인 할인을 받으려는 경우 등 이외 ETC 시스템 이용에 필요한 사항은 본 이용 규정의 사항 외에 별도로 규정됩니다 .

부칙

1. 본 이용 규정은 2026년 4 월 1 일부터 적용됩니다 .
 2. 2025 년 11 월 9 일부 ETC 시스템 이용 규정 (이하 ‘구 이용 규정’)은 본 규정의 적용으로 폐지됩니다 .
- 아울러 본 이용 규정 적용 전에 구 이용 규정에 따른 절차 중 본 이용 규정 적용에도 효력이 있는 것은 본 규정을 따른 것으로 간주합니다 .